

**투자위험등급:**  
**3 등급**  
**[중간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10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10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10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9년 7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7월 1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10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66540
C	86262
C-E	86690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2 조의 6 에 따라 투자신탁채산을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며,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채권	60%이상 사모사채권 : 5%이하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 이 60% 이상이 되도록 운용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함), <u>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A-이상인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u>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3. 후순위채권	20%이하	<u>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2 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인 것에 한함)</u>
4. 고수의 고위험채권 등 (채권, 후순위 채권 및 어음)	10%이상 20%이하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 이 10% 이상 20% 이하가 되도록 운용	<u>2 개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 이하 C 이상의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채권 및 후순위채권과 B+ 이하 C 이상의 신 용평가등급을 받은 어음.</u>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채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10% 수준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 이하 C 이상 채권 및 B+ 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고객 Needs에 부합한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 Portfolio 전략



(2) 비교지수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3 월-1 년) 1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및 어음에 10%수준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3 월-1 년) 1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10% 수준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 이하 C 이상 채권 및 B+ 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 및 부도위험</b>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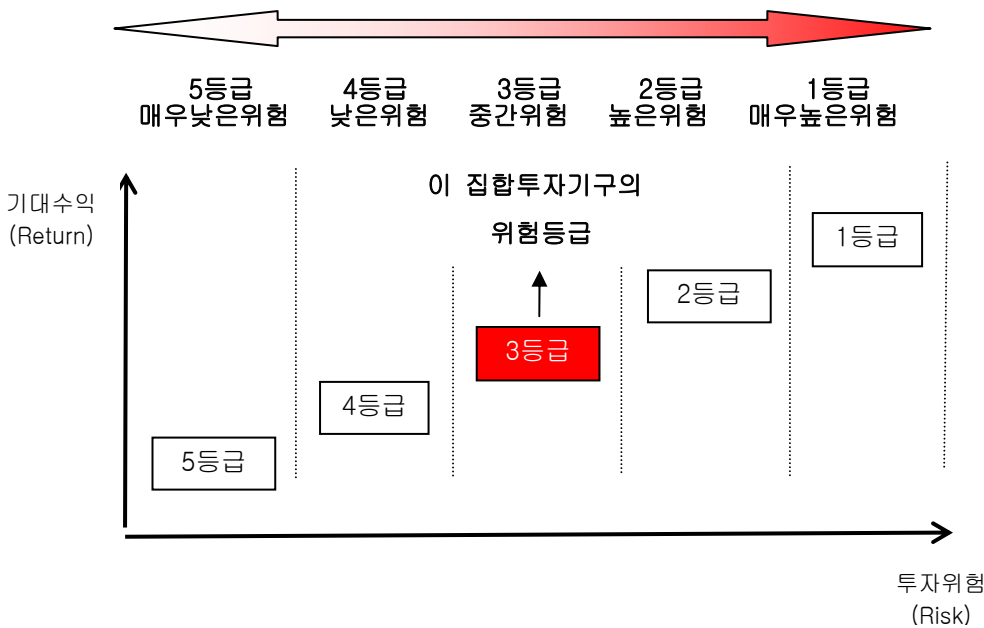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고위험증권 투자위험</b>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 및 어음에도 10%이상을 투자하므로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 부적격기업등급의 특성상 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 및 어음의 경우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니다.
<b>유동성 위험</b>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변동 등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유동성이 추가로 감소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10% 수준에서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 이하 C 이상 채권 및 B+ 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는 채권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 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이 투자신탁은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li> <li>•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운용전문인력(2008.12.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홍장희	1971	차장	14 개	5,762 억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채권운용 4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5 개	3,794 억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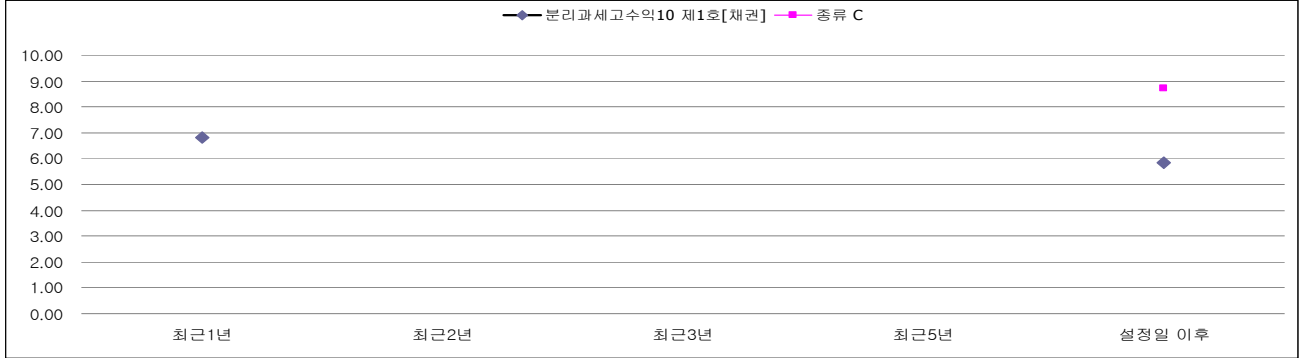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

주 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8년 12월 3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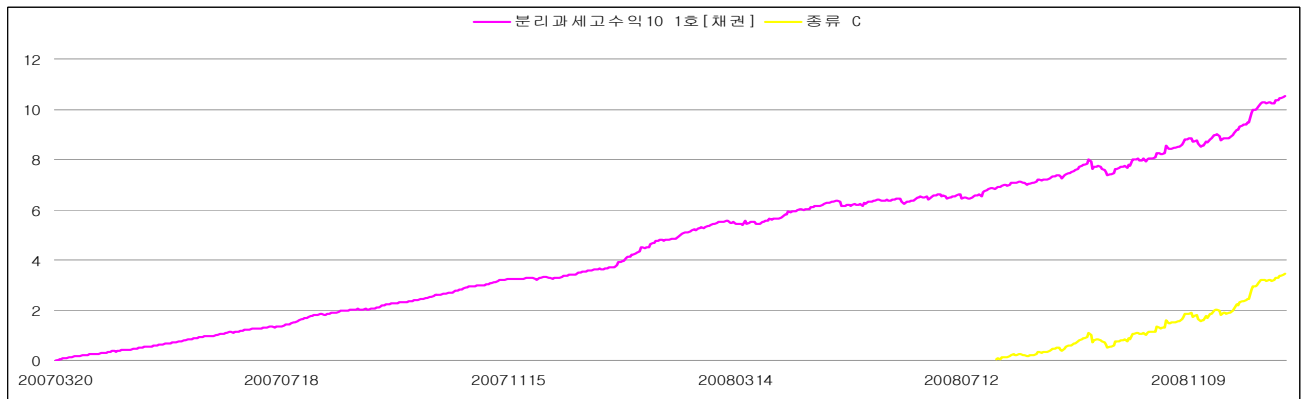
연도	최근1년 2008.01.01 ~ 2008.12.31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7.03.20 ~ 2008.12.31
분리과세고수익10 제1호[채권]	6.81				5.85
종류 C					8.71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차 2008.01.01 ~ 2008.12.31	최근2년차 2007.03.20 ~ 2007.12.31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분리과세고수익10 1호[채권]	6.81	3.64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180 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1356%	0.1356%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164%	0.2564%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기타비용	0.0173%	0.0161%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5173%	0.4561%	
증권 거래비용	0.0021%	0.0009%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	53,013	167,122	292,928	666,786
종류 C-E	46,739	147,346	258,264	587,881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과세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나.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실지 명의의 자로 하며, 수익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제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거주자 (투자원금 1억원 이하)	거주자 (투자원금 1억원 초과)
소득세	5.0%	14.0%
주민세	0.5%	1.4%
계	5.5%	15.4%

■ 세제지원 내용

- 투자원금 1 억원 이하: 소득세 5% 저율 분리과세
- ※ 주민세 0.5%가 가산됨

■ 거래방법

- 통장 및 통장을 대신하는 카드 등 형태의 거래도 포함.
- 투자자는 다수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 개 판매회사를 통해 다수의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음

■ 판매(가입) 기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일부터 3년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2009년 12월 31일에 가입(펀드 매입)한 경우 2012년 12월 30일까지 세제혜택 가능

■ 세제지원이 가능한 1인당 저축한도 등

- 거주자: 투자원금 기준 1억원 이내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한도 없음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비거주자: 거주자증명서(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2) 외국법인: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한민국 국민등이 보유한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분리과세 적용기간 등

-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하더라도 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거주자 15.4%) 적용

-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익금을 출금하는 경우, 분리과세 혜택 적용 배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2 조의 6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 해지(환매)시에도 분리과세 적용)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일부 인출시 인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고수익고위험채권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4 항제 4 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BB, CCC, CC, C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및 B, C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어음

-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간주
-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일일보유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함
- 투자신탁등 설정일부터 매 3개월 단위 평균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기본산식]

$$\left[ \sum_{i=1}^n \frac{\text{고수익채권등 평가액}}{\text{신탁재산평가액 (순자산기준)}} \right] \div \text{매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n)$$

- ※ 기준일이 법정공휴일(기준가 미산출일)인 경우에는 당해 공휴일 전일의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율을 계산함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고수익고위험채권등 투자비율 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10으로 계산
- ※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요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
- 2)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일일보유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함

3)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특히, 제 2 항 및 제 3 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1)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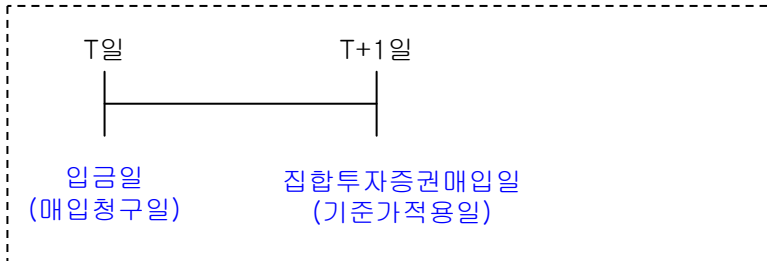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종류 C	가입제한 없음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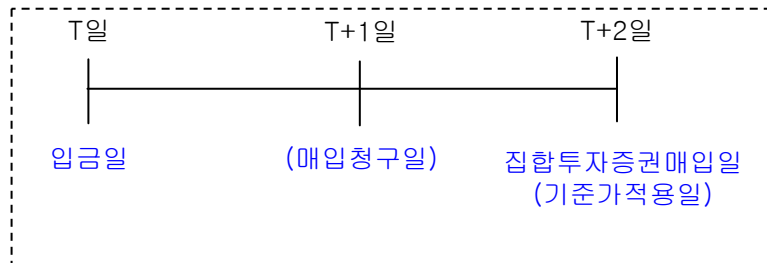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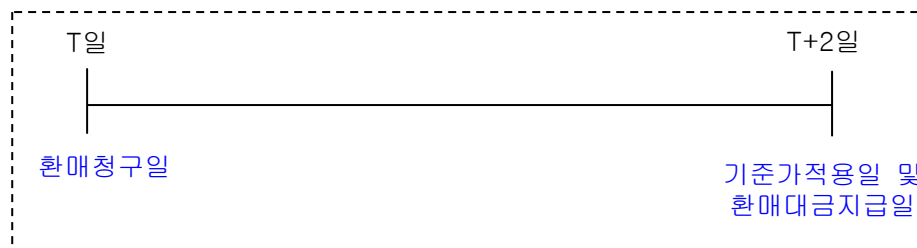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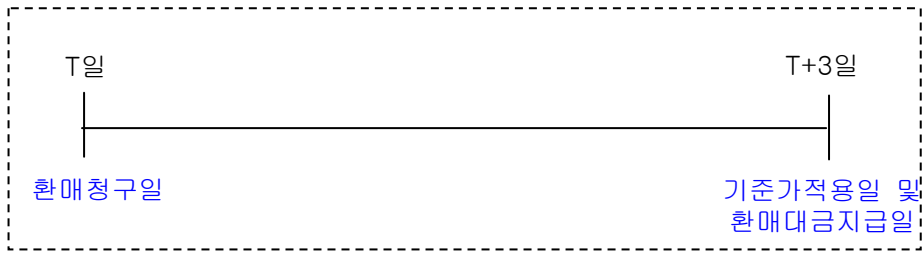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2 기(반기)	제 1 기
	20080919	20080319
I. 운용자산	24,702,855,584	19,646,996,091
증권	20,633,348,832	15,570,606,558
현금 및 예치금	444,699,174	782,428,240
기타운용자산	3,624,807,578	3,293,961,293
II. 기타자산	293,573,475	210,250,343
자산총계	24,996,429,059	19,857,246,434
II. 기타부채	33,349,627	24,201,706
부채총계	33,349,627	24,201,706
I. 원본	24,438,258,603	18,811,007,278
II. 수익조정금	36,782,738	260,606,118
III. 이익잉여금	488,038,091	761,431,332
자본총계	24,963,079,432	19,833,044,728
I. 운용수익	549,377,491	835,038,300
이자수익	740,360,917	818,383,014
매매/평가차익(손)	-193,690,245	8,633,986
기타이익	2,706,819	8,021,300
II. 운용비용	61,339,400	73,606,968
관련회사보수	59,195,318	70,206,270
기타비용	2,144,082	3,400,698
III. 당기 순이익	488,038,091	761,431,332
* 매매회전율	0	0
* 매매수수료	356,917	665,992